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이인식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454

발의일자 : 2023. 11. 15.

발 의 자 : 이인식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, 엄샛별,

모병두 의원

1. 제안이유

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 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 성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5조)
- 다.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보급 및 이용촉진(안 제8조)
- 마. 단체의 육성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바. 사무의 위탁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「지방자치법」제13조
- 2)「문화기본법」제5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2023. 11. 16. ~ 2023. 11. 2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국악"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(樂), 가(家), 무(舞), 희(戱)를 포함하고,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.
- 2. "국악문화산업"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(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·무형의 재화·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)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금천구"라 한다)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, 인력,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
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
 - 3.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- 4.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 - 제7조(국악 진흥 사업) 구청장은 금천구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
 - 2. 국악의 대중화·생활화를 위한 사업
 - 3. 국악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
 - 4.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·양성사업

- 5.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
- 6.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
- 7.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
- 8. 그 밖에 구청장이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(보급 및 이용촉진) 구청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·중·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- 제9조(단체의 육성·지원) ① 구청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 한다.
- 제11조(사무의 위탁)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·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- 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유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 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
□ 「문화기본법」

[시행 2021. 9. 11.] [법률 제18379호, 2021. 8. 10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한 재원(財源)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,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, 지역 간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문화영향평가"라

한다)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